

대기배출시설 [] 변경허가 신청서

[] 변경신고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
변경허가는 7일, 변경신고는 5일 (사업장 명칭변경, 대표자 변경,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)			

허가(신고)번호 제 호

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)	

설치 예정일

가동 개시 예정일

변경사유

변경 내용	시설변경	기존사항				변경사항			
		시설명	연료 및 원료 사용량	용량	수량	시설명	연료 및 원료 사용량	용량	수량
대기오염물질 발생량	대기오염 물질 종류	연료 및 원료 사용량	배출계수	발생량	대기오염 물질 종류	연료 및 원료 사용량	배출계수	발생량	
그 밖의 변경							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(변경허가 신청, 변경신고)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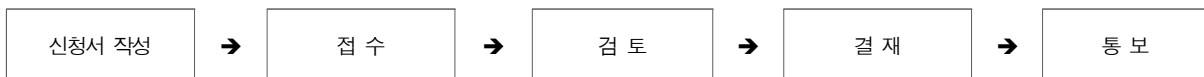
유역환경청장 · 지방환경청장 · 수도권대기환경청장

또는 시 · 도지사

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2.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3.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(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각 1부4.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(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) 1부5. 원료(연료를 포함한다)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(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) 1부6.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(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) 1부7.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(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) 1부8.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(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1부9.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(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10. 수질 및 소음·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(수질 및 소음·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11. 수질 및 소음·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(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·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변경허가 : 5,000원 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,000원)2. 변경신고 : 없음
------	---	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민원실

유역환경청·지방환경청·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·도
(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담당부서)